

7.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65號 1990. 8. 8 公布.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자목 중 “시설용지로”를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차고 기타 시설의 용지로”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집하장의 설치”를 “집하장과 저장시설의 설치”로 하고, 동항 제10호중 “주유소 등의 설치”를 “주유소(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등의 설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제17호·제2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의2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의 설치

17.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

과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20. 농업협동조합·농지개발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사용 또는 운영하는 사무소·창고·판매점 및 연쇄점 등 농어민 이용시설의 설치

20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기계수리시설의 설치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로서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촌휴양지의 조성

23. 공업단지 인근토지로서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원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설치

제15조제1항제7호중 “주유소 등의 설치”를 “주유소(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등의 설치”로 하고, 동항제1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근로자복지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추

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제15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1호·제24
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에 제24호의2·제28호 및 제2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부지의 총면적
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의
설치

20. 축산시설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시
설의 설치

21.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또는 수
산물의 집하장과 저장시설 및 1차적
인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24. 농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
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사용 또는 운영하는 사무소·창고·판
매점 및 연쇄점 등 농어민이용시설의
설치

2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기계수리의 설치

2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로서 총면적
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촌휴양
지의 조성

28. 산림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29. 공업단지 인근토지로서 부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원임
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설치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
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이거나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
장의 증설을 제외한다.

제19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중소기업자의
공장이 아닌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포함한다)으로
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퍼센트 이
하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생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30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안에서의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을 제외한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 안에서 골프장업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설치허가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6호 또는 제1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존의 공장의 증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설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대하여는 제30조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改正理由 ▷

經濟活性化綜合對策 및 不動產投機抑制對策의 일환으로 工團周邊의 耕地地域과 山林保全地域에 대하여 社員賃貸住宅 등을 建設할 수 있도록 하고, 住宅所有 上限制의 施行에 따라 6大都市내에서 테니스장 등의 體育施設이 減少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耕地地域과 山林保全地域에 體育施設을 設置할 수 있게 하는 등 用途地域내의 行爲制限을 현실에 맞게 일부 緩和하는 한편, 脫法的인 土地投機 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民事訴訟法의 和解節次에 따라 權利를 移轉 또는 設定 하는 경우에도 土地去來許可를 받게 하는 등 現行規定의 運營上 未備點을 개선·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 가. 耕地地域안에 設置할 수 있는 施設에 敷地面積이 1萬제곱미터 미만인 體育 施設, 敷地面積이 3萬제곱미터 미만인 社員賃貸住宅 및 寄宿舍, 小規模 農機 械修理施設, 農水產物 貯藏施設 등을 추가함(令 第14條第1項).
- 나. 山林保全地域안에서도 耕地地域에서 새로이 허용하는 施設과 農水產物의 集 荷場 및 自然休養施設 등을 추가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 다. 水產資源保全地域에서 廢水나 特定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中小企業 으로서 水產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工場敷地面積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工場을 增設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1項第6號).
- 라. 開發促進地域안에서 特定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기존工場은 工場敷 地面積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增設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 條 本文 但書).
- 마. 現在는 民事訴訟法의 和解節次에 따라 權利를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에는 土地去來許可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土地를 去來하면서 和解로 위장하여 許可制를 회피하는 脫法行爲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앞으로는 和解의 경우에도 土地去來許可를 받도록 함(令 第30條第12號).
바. 首都圈 이외의 地域에서 일단의 土地의 面積이 10萬제곱미터 미만인 國土利
用計劃의 決定·變更權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고, 體育施設의 設置·이용에 관
한 法律에 의한 體育施設의 立地를 위한 國土利用計劃의 決定·變更權은 面積
制限없이 市·道知事에게 委任함(令 第58條第1項第2號 가目 및 라目).

〈법제처 제공〉